

의안번호	제 222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5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발 의 자	강태원의원 외 인
발의연월일	2008년 4월 7일

##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강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2
----------	-----

발의연월일 : 2008년 4월 7일  
발 의 자 : 강태원·박재국·연만흠·김환동  
이필용·조영재·이종호의원  
(7명)

### 제정이유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안 제3조)

이 조례는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함.

#### 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충청북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두고, 정책연구과제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및 활용(안 제8조)

정책연구용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연구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그 추진상황 및 관련자료를 도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활용하도록 함.

라.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안 제13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위원 등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평가전문위원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예비평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마.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안 제14조)

과제담당관(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 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참고자료

가. 관련법규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관련부서 의견 반영하였음.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충청북도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충청북도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POOL 용역비)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을 제외한 충청북도 본청의 실·국·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들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및 활용) 도지사는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용역계약사항, 용역의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제담당관) ① 도지사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팀장·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정책연구과제신청서의 제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공개자료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과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점검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중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인 위원 또는 해당 연구 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예비평가하고, 예비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결과를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 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점검) 도지사는 매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 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제16조의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은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11(생략)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 5. 16)